

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· 제공대장

① 개인정보파일명	CCTV 영상자료(캡처사진)			
② 이용 또는 제공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목적외 이용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목적외 제공			
② 이용 · 제공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명칭	수성대학교	담당자	성 명	윤 원 경
			소 속	시설지원팀
			전화번호	053-749-7412
③ 제공받는 기관 또는 부서의 명칭	동그라미 법률사무소	담당자	성 명	정 흥 욱
			소 속	
			전화번호	053-743-0885
④ 이용 · 제공일자, 주기 또는 기간	제공일자 2026. 05. 22.			
⑤ 이용 · 제공형태	전자파일(PDF)			
⑥ 이용 · 제공목적	CCTV 열람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신원조사 관련 확인			
⑦ 이용 · 제공근거	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			
⑧ 이용 · 제공항목	신원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CCTV 영상 자료(캡처사진)			
⑨ 제공시 제한내용 또는 요청사항	<p>1.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, 업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2. 비밀정보와 관련 있는 사항을 위탁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. 이를 위반할 경우 민,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.</p> <p>3. 비밀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학에 통지하여야 하며, 상호간에 정한 거래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나 영업상의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, 타인에게 양도, 이전,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4.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사, 재생산, 제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5.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담당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 및 관리.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6. 위탁종료시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(복사 등에 의한 자료 포함)를 대학의 요구에 따라 반납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대학에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			

○ 이용·제공근거 : ‘개인정보보호법’ 제10조의 2항 1호 ~ 9호 등 관련 근거 기술

항 목	상 세 내 용
제18조 제2항 1호	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(제1호)
제18조 제2항 2호	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(제2호)
제18조 제2항 3호	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18조 제2항 4호	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제18조 제2항 5호	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제18조 제2항 6호	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18조 제2항 7호	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18조 제2항 8호	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18조 제2항 9호	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